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127>

JCCT 2019-2-16

##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남선모\*

SEON MO NAM\*

**요약**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범죄피해자, 피해자 변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및 금지규정, 권리보장의 확대

**Abstract** In this study, I set the allowable range of viewing / copying rights of investigation records on criminal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 tried to grasp the contents of the suspect's statement at an early stage and support it in order to cope appropriately. Recently, the social consideration of people suffering from crime victims is expanding in fac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s set by the lawyer of the suspect in relation to the subordinate statute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reading of the investigation record. In parallel, it is necessary to apply to the victim's lawyer or bereaved. This is a part that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certifying private rights such as browsing of litigation records to the victim and ultimately has a purpose related to the allowable range. Although it is the right to receive the investigation result at each stage, it is not used properly. Especially when distorted investigation progresses, if the suspect is not prosecuted, the victim may be in a state of regret. The important part can be summarized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ion of the victim's lawyer is allowed to view and access the criminal records. This section has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current Act and its functional aspects should be emphasized and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environmen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victims' rights in the future. It is also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Key words** : Crime victim, Victim's attorney, Viewing and copying investigation records, Permission and prohibition provision, Expansion of rights guarantee

\*정회원, 세명대학교 법학과 (제1저자)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 2018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6일

Received: November 03, 2018 / Revised: December 07, 2018

Accepted: January 06, 2019

\*Corresponding Author: nsm@semyung.ac.kr

Dept. of Law, Semyung Univ, Korea

## I. 서론

형사소송에서 수사기록열람권은 기본적 권한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에 속한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결되어야 그에 대한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절차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해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살인·대형참사 등 강력사건에 한해 공소제기 전의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 기록 열람을 허용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서 실시되는 현장검증을 통하여 피의자의 범행재연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는 요소이다(범죄수사규칙 제135조, 실황조사). 향후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에 대해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순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살인사건이나 대형참사 등 강력사건에 한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공판과정에 대비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재산범죄까지 확산하면 자칫 민사재판의 개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제기 전의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등)의 필요성 및 그 허용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의 분석이 선결되어야 하며 제도상의 미비점 또한 보완하여 각 단계별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후술하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목적을 지향하는 일방편이기도 하다. 물론 정보공개법상의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 원용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구미제사건으로 처리될 상황이었거나 최근 대형 참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범인의 처벌과 관련한 피해유족의 수사기록 열람 등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공소제기 전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 II. 피해자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

### 1.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

수사절차상 검사에 대응하여 변호인은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 외에 상대방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나아가 관련 반대 증거를 찾아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내용을 인정하고 합의나 공탁 등을 통해 양형을 주장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헌법에서도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외 제2항에서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절차상 범인의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수사절차상 피해자변호사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인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예로서 「형사소송규칙(대

법원규칙 제2696호, 2016.11.29. 타법개정, 시행은 2016.12.1.)」, 이 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에서는 그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제도상의 문제들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하위법령에 예외적 허용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강력사건 피의자의 죄질을 검토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별로 그 허용의 범위를 정하고, 각 단계별 신청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변호사의 권리 보장 중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해서는 판례 및 적용 법조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공소제기 전의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해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범인의 죄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는지, 향후 개선해야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연구 방향

향후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인 등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권리를 위해 미리 사건의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진정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 공소제기 전의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등)와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상 허용 및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의 비공개 진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하위법령 등의 예외규정을 살펴본 바,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신청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 변호사의 권리와 병행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제831호, 2015. 12. 31.)」, 이 지침 ‘제3조(기소 전 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에서 기소 전 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공소제기 전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16호, 2018.1.3.)」, 이 규칙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에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강력사건의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및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분석하여,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원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예외 규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방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보공개법에서의 활용방안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의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의 분석

피해자 변호사의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등의 허용여부의 문제는 향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 수사공개 거부 문제와 병행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9호, 2013.12.17. 일부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외에도 정보공개법에서의 활용방안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의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부분의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김재민(2017)은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집행 가능한 피해자의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권리 패러다임은 희생자 권리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합하며, 이에 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법 제도가 권리 패러다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전개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피의자 못지않게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병행하여 2000헌마474 결정이나 경찰청 2016.4.25. 형사기록열람 관련 업무지침 지시 등을 참조해 신청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중요한 사안은 수사에서 재판진행까지의 각 단계별로 피해자 변호사에 의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 적극적인 신청이 필

수적이며 그 필요성을 도출해 보는 방안이 중요하다. 류경희(2015)는 경찰의 주요부서가 수행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부서의 기능적 의도와 같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범죄 피해자 정책의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 또한 피해자 변호사에 의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권리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기수(2016)는 경찰법 연구에서 “수사 과정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까지 자백을 통해 알게 해준다. 이것이 이른바 ‘비밀의 폭로’라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경우도 있고, 범행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를 풀리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변호사에 의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단계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게 하는 일방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참고문헌상의 여러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반 제도상의 문제들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하위법령 및 내부 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수사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수사기관의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돼 있으나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III. 허용범위 및 금지규정의 검토

공소제기 전의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등)와 관련, 형사소송법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금지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수사의 비공개 진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보인다. 이에 예외규정을 살펴본

바,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신청이 필수적이며 피의자 변호사의 권한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환경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 1.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의 범위 설정

##### 1) 공소제기 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이나 공판절차에서 생성된 증언이나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는 공판기록은 공정한 재판의 이념상 그 열람·등사가 허용됨은 당연하다. 형사소송법 제35조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정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의하여 검사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에 의하여 증거보전 후 소송계속 중의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실정에 있다.

##### 2)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 중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증거물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포로 피의자의 무죄추정권이 침해받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47조, 제198조 제2항).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5항(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에 근거하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 그 허용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향후 살인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피해자변호사에 의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제도를 도입하여 영구미제사건 등을 줄여나아가야 하며 피해자의 억울한 심경을 조기에 치유함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기

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부분이 피해자 변호사 및 유족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설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하위법령의 규정

1)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제831호, 2015. 12. 31.)」

### 가.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이 지침 '제3조(기소 전 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에서 기소 전 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이 지침에 의하면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열람·등사제한의 신중). 이는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병행하여 피의자의 권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사진척에 따른 단계적 수사내용이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열람·등사권이 허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나. 서증조사, 보석청구의 경우 등 기타 특칙부분

서증조사나 보석청구의 경우 등 기타 특칙부분과 관련하여 제6조(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에서는 ①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② 규칙 제24조 제1항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기타 특칙으로 제7조(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를 살펴보면,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료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만약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담감

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제8조(열람·등사의 제한)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게 삭제되어야 하며 제15조(다른 수사기관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서는 "① 군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도 수사진행과정의 파악을 위해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침 제10조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 2)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16호, 2018.1.3.)

이 규칙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에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장애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뒤에 거론하는 대형 참사사건의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및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또한 제24조(서증조사등) 제①항에서는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설정이 불분명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과 관련하여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과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검사의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결정은 피해자 변호사 및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안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11.29. 타법개정, 시행 2016.12.1.)

열람·등사의 허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에서는 그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 중에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록 중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 또한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병행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 제출과 판사의 결정으로 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하고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101조). 또한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알권리 및 그 내용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2000헌마47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약칭: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정보공개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며 공개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① 공공기

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중 제4호와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내부규칙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 처분은 위법’, 2016. 5. 6.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1차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 경찰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경찰청 2016.4.25.형사기록열람 관련 업무지침 지시를 근거로 사건 진행과 병행하여 미리 신청(2016.5.9. 대한변협) 및 사건 진행 각 단계별로 신청하는 외 공개 정보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피해자 변호사의 적극적 대처가 중요해 보인다. 독일의 형사조정제도(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조정)는 독일 형법 제 46조 제2항의 양정사유 중 ‘의무 위반의 정도’ 특히 ‘배상을 위한 노력(손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및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이 이루어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벌금형을 면제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46조a). 즉 범죄자가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기 위하여 그 범죄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했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독일 형법 제46조a 제2호)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형은 면제할 수 있다. 이는 공소제기 전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피해자에 의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분석된다. 형사조정에 앞서 사건의 핵심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의 원상회복을 기하여 진정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해서는 ‘제반원칙 준수’라는 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누54225)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공소제기 전 미리 사건의 핵심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3. 검토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요청하여 제공하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시의적절하게 사건에 대처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멸실우려가 있는 증거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지침은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제15조의 규정도 무기대응의 원칙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경우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동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2, 제96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병행하여 피해자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의 경우, 공소제기에 앞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으로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를 보면 이는 유죄답변(Plea of guilty)을 놓고 협상하는(Bargaining) 것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유죄답변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 즉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교섭 내지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2], 피해자들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유죄답변협상시 검사들과 합리적으로 합의할 권리를 갖고 있다. 검사가 피고인과 유죄답변협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이 유죄답변협상 거래를 거절하거나 유죄답변협상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처

분 이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협의명령을 이행한 점을 법원에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경우 사실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그 제한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동지침 제8조). 이와 관련, 살인 등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허용여부는 수사관서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위법령 등 지침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정리하여 형소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형소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나 피해자변호사에게도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소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에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외 동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구체적인 열람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해자나 피해자변호사에게도 열람·등사권의 기회가 보장되어 공소제기에 따른 사전대비로 피해자에게도 권리 보장의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 IV. 피해자 권리 보장의 확대

범죄피해자학의 학문적 성격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의 옹호, 피해자의 구제, 피해 및 재피해 방지대책

을 위해 형사입법을 통한 규범적 노력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규범과학의 속성을 가진다[4], 강력범죄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응당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5],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대해서는 그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사건종결 미진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사건진말에 대한 구체적 규명이 없어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과거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가 조연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 그 위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처벌에 역점을 두는 형사사법이 아닌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그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사건에 정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가 법정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건의 절차적 진행상황과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7], 이는 바로 공소제기에 앞서 해당 사건의 열람·등사권을 확보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2016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면서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동안 과학수사의 발전도 이러한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범인을 잡겠다는 피해 가족의 끈질긴 요구와 수사기관의 의지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1. 강력범죄피해자의 미제사건에 대한 상황적 인식

1) 노원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 초동수사 당시 범인은 성폭행 전과가 없어 용의선상에서 제외 -

1998년 오후 1시경 혼자 집에 있던 주부 甲(당시 34세)은 성폭행을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甲의 남편명의 체크카드로 151만원을 인

출한 후 자취를 감췄다. 단서는 현장에 남은 범인의 DNA와 혈액형, CCTV에 찍힌 범인의 흑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미제사건으로 처리된 후 2016년 강력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다. 범인은 당시 20대로 추정되어 1965년부터 1975년 사이 출생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를 전수조사해 8000여 명으로 압축되었다. 이어 사진과 혈액형 등을 대조해 용의자 125명 중 우선순위 10명을 정했다. 초동수사 당시 범인은 성폭행 전과가 없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인물이었다. 이후 범인이 버린 담배꽂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마침내 2016년 10월 말 국과수에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였다.

2) 대구지역 여대생 고속도로 사망 사건

-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종결 처리 -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경 구마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한 여대생이 23t 화물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특이점으로 시신이 훼손되고 속옷이 없어진 점이었다. 전날 밤 10시 40분경 대학축제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캠퍼스를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된 계명대 재학생 정00(당시 18세)양이었다. 이러한 특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수사결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이었다. 피해 유족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영구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검찰은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15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乙 등 스리랑카인 3명이 술에 취한 정양을 고속도로 부근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 사건은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이 제정된 후 사건 해결의 가능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법률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도록 하는 법률로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에 대상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엔에이 자료를 분석해 15년 전 정양 속옷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가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붙잡힌 스리랑카인 乙의 디엔에이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사건을 해결하였다.

3) 분석

범죄피해자 권리는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을 기준으



로, 그리고 그 권리의 실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 보장 가능성이 달라진대[8], 사건 (1)의 경우, 초동수사의 필수요건으로 용의자로 지목되면 당시 동일 전과가 없어도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선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 (2)의 경우, 19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의 죽음에 대해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 정씨는 ‘죽을 때까지 딸 억울함 밝힐 것’이라며 생업을 전폐하고 사건을 파고들어 재수사를 이끌어 내었으며, 딸이 사망 전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10년 디엔에이법이 제정된 후 사건 해결의 가능성으로 수사에 착수한 수사기관의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의 결실로 보이며 위 사건 모두 사례별 기록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의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피해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전보일 것이다[9],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법률컨설팅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 즉 결과적인 손해배상에 의한 피해회복만큼 회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특히 가해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의미가 큰 ‘회복’이 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10]. 향후 이러한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 및 유족에게 신속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 2. 대형 참사사건의 피의자 죄질의 검토

### 1) 수사절차상 조사한 내용의 제공(‘게을리 한’부분)

최근 종로고시원 화재사건(7명 사망),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29명 사망), 세월호사건(299명 사망) 등 대형 참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사건기록은 피해자변호사 및 유족에게 즉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 중 세월호 사건을 분석해 보면, 세월호는 엔진이 꺼진 뒤 101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 이렇게 빠른 침몰의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배의 지하층은 기관실과 타기실 등 중요기관이 있으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수밀문과 5개의 수밀 맨홀이 설치돼 있다. 수밀문은 조타실에서 원격장치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다. 이는

조타실에 비치된 항해일지(航海日誌, logbook)를 대조하여 ‘게을리 한’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항해 중인 선박은 선원법 20조에 근거하여 항해일지를 선내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항해일지는 항해 중 직무 수행에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수사절차에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내용 중 ‘게을리 한’부분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공소제기에 앞서 신속히 제공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사고 감지가 느껴지면 신속히 버튼을 눌러 수밀문과 수밀맨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비취볼 때 ‘게을리 한’ 상태의 정밀 분석이 실제로 조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제공될 부분이다.

### 2) 공소제기 전 열람·등사의 필요성(‘부작위범의 인정’여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증인과 피고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거나 수사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백내용, 증거 또는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자백내용을 그대로 두고 수사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신문을 수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다 [11]. 이에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재판절차의 기술적 측면이 아닌 그 필요성 여부를 따져 허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작위범의 범행,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범의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 4128 판결). 건물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재난은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므로 이런 비상상황에서 사용자가 언제든 건물의 외부로 최대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12]. 건축법을 현실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분석

향후 관련 장비의 자동화 등 선박 항해기록 자동보고시스템에 근거하여 사고의 해결과정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항해기록 자동보고시스템 및 그 방

법 외에도 선박 항해의 가시 정보 관리 장치 및 방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13]. 이와 함께 본 사건 이후 실제로 해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해결과정에서도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대응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선례의 중요성이 인식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게을리 한' 부분이 사실대로 조사되었는지 여부, 백드래프트('Back draft') 상황의 과학적 분석[14], 필름처리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가각하여 유리문 파열 여부, 건물 하층부 벽면의 파열 등으로 인명구조 노력에 대해 조사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열람·등사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의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드라이비트(drivit)'공법을 과다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상 열람·등사권의 보장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넣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단열재를 곧바로 외벽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다[15]. 이러한 여러 과실부분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게을리 한'부분을 중심으로 사실 조사 과정이 열람·등사권의 보장을 통해 공소제기에 앞서 피해자 유족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3. 소결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설정이 불분명하지만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의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등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 수사공개 거부 문제에서 2015. 7. 20.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검찰사무규칙을 근거로 한 수사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며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하여 2000헌마 474 결정이나 경찰청 2016.4.25. 형사기록열람 관련 업무지침 지시 등을 참조해 신청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요한 사안은 수사절차에서 단계별로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 의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 적극적인 신청이 필수적이며 그 필요성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수사절차상 경찰은 범죄 발생을 저지하거나 예방하

기 위해 공공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고 있다[16]. 여기에 범죄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범죄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제반 제도상의 문제들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하위법령 및 내부 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수사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수사기관의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와 범죄자 권리의 균형,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17]. 이와 더불어 범죄자의 죄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살인 등 강력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전 피해자 변호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반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검찰보존사무규칙, 형사소송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변호사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9호, 2013.12.17. 일부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외에도 정보공개법에서의 활용방안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의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해 허용 및 금지규정의 검토 외에도 피해자 권리 보장의 확대 과정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원용하였다. 특히 살인 등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공소제기에 앞서 사건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보장의 확보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구두변론 및 공판중심주의 절차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신청의 각하)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열람·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 없음으로 제시될 경우 오히려 결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기능하는바 적극적 신청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건 담당검사의 열람·등사제한의 신중과 관련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열람·등사제한의 신중)에서는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해서는 ‘제반원칙 준수’라는 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2015누54225). 나아가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살인 등 강력사건의 경우 자칫 장기 미제 등으로 인한 향후 피해회복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라도 공소제기 전 미리 사건의 진행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소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References

[1] Lee, Ki-soo, “Signs of False Confession which Appear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Vol. 14, No. 2, 2016 December, p. 52.  
 [2] Lee, Young-Ran, US Plea Bargaining System Operation Status,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05, p.2.  
 [3] Ryu Byung-Kwan, “Victims’ Rights in the Adversary System -The focus on the U. S.’s Crime Victims’ Rights Act(2004)-”, Korean Association Victimology,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19, No. 1, 2011, p. 48.  
 [4] Lee, Sung Ho and others, 『Crime victimization』, 21segisa, 2005, p. 15.  
 [5] Kim Tae Kyoung·Yun Kyoung Hee, “Qualitative

Case Study on Victim’s Experience with Investigative Procedure of Violent Crim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4, No. 3, 2016, p. 5.  
 [6] Oh, Jung-yong · Kim Sung eun, “A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Right to Indemnity for Crime Victim Relief Fund”, Law Review Vol.16, No.2, 2016, p. 321.  
 [7] Jung, seung-hwan, “Criminal Procedure Law ”, bag-yeongsa, 2018, p. 465..  
 [8] Kim, Jae Min, “Securing the Enforceability of Criminal Victims’ Rights”,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5, No. 3, 2017, p. 38.  
 [9] Hwang, Tae-jeong, “Crime Victim Relief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 Implications on Policy and Law”, New trend of criminal law, Vol. 48, 2015, p. 294..  
 [10] Kim, Zae-hee, “Attorneys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Future Tasks ”,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5, No. 2, 2017, p. 21.  
 [11] Lee Ki-soo, previous paper, p. 44.  
 [12] Han, Dong-ho ·Kim, Jong Kouk, A Study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Build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Earthquake Disaste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2018 February Vol. 4, No. 1, p. 311.  
 [13]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1029448B1/ko>, December 29, 2018.Search  
 [14] [https://en.wikipedia.org/wiki/Backdraft\\_\(film\)](https://en.wikipedia.org/wiki/Backdraft_(film)), Backdraft is a 1991 American drama thriller film directed by Ron Howard and written by Gregory Widen. The film stars Kurt Russell, William Baldwin, Scott Glenn, Jennifer Jason Leigh, Rebecca De Mornay, Donald Sutherland, Robert De Niro, Jason Gedrick and J. T. Walsh. It is about Chicago firefighters on the trail of a serial arsonist.  
 [15] [www.hani.co.kr/arti/PRINT/824768.html](http://www.hani.co.kr/arti/PRINT/824768.html), January 21, 2019, Search.  
 [16] Kim, Hyo-Jin and others, “Foster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esting the Impact of Police Legiti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4 No.4, 2016, p. 39.  
 [17] Kim, Jae Min, previous paper, p. 41.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